
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동의

본인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이하 이월약정)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기 신청 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이 적용됨을 동의합니다.

- 이월약정은 상기 신청카드의 유효기간 내 상시 제공되는 결제방법으로 이월약정 이월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월약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단, 2013년 7월 31일 개정약관 시행전 발급된 리볼빙 카드 회원의 경우 이전 리볼빙 결제 약관 및 약정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리볼빙 필수 안내
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 내용과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」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(이자)가 부과됩니다.
-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으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」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,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」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, 약정결제비율을 100%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.
-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(수수료율)이 상승하거나,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,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.
- 약정결제비율을 100%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,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.

< 참고 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등 계산 사례

-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 잔액 : 일시불 50만원
- 약정결제비율 : 50%
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율 : 10%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** : 10만원
- 당월 신규이용금액 : 일시불 30만원
- 최소결제비율 : 10%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용경과일수* : 30일

*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

**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⇒ 당월 결제 금액 : 504,109원

※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(504,109원)이나, 최소결제금액(184,109원)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, 잔여결제 금액(32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- 최소결제금액

(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) +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+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. 8만원 + 4,109원 + 10만원 = 184,109원

- 약정결제금액

(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의 약정청구원금) +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+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. 40만원 + 4,109원 + 10만원 = 504,109원
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(리볼빙)의 최소청구원금

(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 잔액 +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신규이용금액) × 최소결제비율 (50만원 + 30만원) × 10% = 8만원
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(리볼빙)의 수수료

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 잔액 ×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율 × 이용경과일수/365(윤년은 366) 50만원 × 10% × 30일/365 = 4,109원
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(리볼빙)의 약정청구원금

(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 잔액 +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신규이용금액) × 약정결제비율 (50만원 + 30만원) × 50% = 40만원